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 28 차 세션

77 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7 년 3 월 30 일

##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류민희 minhee.ryu@hopeandlaw.org, +82 2 364 1210)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김진 jean1228@gmail.com, +82 2 537 5459)
- 참여연대 (백가윤 pspdint@pspd.org, +82 2 723 5051)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 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 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 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 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 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 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 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목 차

## I. 배경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1
B. 국가인권위원회	1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

##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A. 평등과 비차별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인종차별 금지	
B.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4
사형제	
고문방지	
C. 법의 집행과 법치	4
군대 내 인권	
D.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5
부부간과 가정폭력 처벌	
주민등록제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DNA 수집	
보호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정보유출	
E.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8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원 표현의 자유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F.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1
가사노동협약 비준, ILO 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좋은 일자리	
책임 기업 경영과 공급사슬	
NCP 개혁	
G.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14
사회보장제도 및 빈곤퇴치	

건강보험  
주거권  
교육권  
공적연금 및 노인돌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H. 소수자** ----- 17

장애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 구금  
인신매매  
난민과 난민 신청자

**I. 여성과 아동** ----- 20

아동권리 보호 일반  
아동친화적 사법제도  
보편적 출생등록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입양  
여성차별금지  
미혼모 권리보호  
여성 노동자의 권리 및 직장 내 성희롱

**J. 발전권** ----- 25

공적개발원조

## I. 배경

1. 이 보고서는 한국 77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 년 2 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2 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2.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 제 2 선택의정서,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권 규약 22 조에 대한 유보를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29 호, 87 호, 98 호, 105 호를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국제 조약을 적용하는 경우는 2000 년대에 949 건이었던 것이 2010 년대에는 1,959 건으로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지 않고 그 조차도 대부분이 난민협약, 자유권 규약 관련 판결이다.<sup>1</sup>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결과도 국내 상황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 권고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는 국회 내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미비준 국제조약 비준 및 남아있는 유보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 B.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4)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 결여,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구 ICC) 등급심사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보류 결정을 받았다. 2016 년 5 월, GANHRI 은 최종적으로 인권위에 A 등급 평가를 하면서도 인선기관인 청와대, 대법원, 국회의 일관된 인선 기준이나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공식 공고, 단일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sup>2</sup> 그러나 2016 년 1 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선 기준 공개, 시민사회 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인선기관에 권고된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2016 년 5 월 등급평가 이후 2017 년 3 월 현재까지 인선된 상임위원 1 명, 비상임위원 4 명(1 명은 연임)의 인선절차는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식 공고가 게재되었을 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인선 기준이나 절차도 공개되지 않는 등 GANHRI 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위원장 포함 인권위원 11 명 중 8 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다양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투명한 인선절차 및 기준 마련, 독립적 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인권 관련**

<sup>1</sup>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공동집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과 법원, 2013

<sup>2</sup> GANHRI,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Geneva, 9-13 May 2016), Pp.41-43.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FINAL%20REPORT%20-%20MAY%202016-English.pdf>)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5)

4. 한국 정부는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단 구성 시에 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그 명단을 살펴보면 학계, 법조인, 연구원, 종교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시민사회 관계자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 년 9 월 30 일, 2017-2021 실행 예정인 3 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NAP 초안은 공청회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3 차 NAP 가 실행되어야 할 2017 년 3 월 현재, 진행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 담당자는 지난 2016 년 9 월 공청회 이후 열려야 할 정부부처 실무협의회 의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는데 2017 년 3 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식인 이유로 실무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NAP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 차 NAP 가 언제 공개될 지, 각 정부부처에서 해당 NAP 를 언제부터 반영할지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NAP 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 A. 평등과 비차별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1, 22, 23, 24):** 2007 년 차별금지법 제정 첫 입법 시도 이후 국회에서는 3 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반성소수자 단체들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조직적 반대 이후 발의자들은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였다.<sup>3</sup> 정부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논란은 정부가 2007 년 제출한 정부 초안에서 7 개의 차별금지사유<sup>4</sup>를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sup>5</sup> 법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정부는 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대중 캠페인도 이행한 적이 없다.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확한 언어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6.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권고 33, 34):**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많은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동성애자/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sup>3</sup> Human Rights Monitor South Kore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ithdrawal: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back tracks", 5 May 2013. <http://www.humanrightskorea.org/2013/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act-withdrawal-korea-human-rights-situation-back-tracks/>

<sup>4</sup> 2007 년 삭제 된 7 개 차별사유: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sup>5</sup>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Anti-Discrimination Bill Excludes Many", 6 November 2007. <https://www.hrw.org/news/2007/11/06/south-korea-anti-discrimination-bill-excludes-many>.

더욱 심각하다.<sup>6</sup> 2016년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성소수자들이었다.<sup>7</sup> 또한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재단등록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법무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up>8</sup> 성소수자 자금심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는 2014년, 2015년, 2016년 반대자 혹은 경찰에 의해 물리적, 법률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sup>9</sup> 교육부는 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권인 정보,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sup>10</sup>

군형법 제 92 조의 6는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 행위를 범죄로 보고<sup>11</sup> 한국에서 동성 간의 접촉에 대해 유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며 징집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 조항은 군대에 가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sup>12</sup> 한국 정부는 2차 UPR<sup>13</sup> 과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sup>14</sup> 에서 군형법 폐지에 대한 권고를 받았으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sup>15</sup>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 92 조의 6를 폐지하고,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인종차별 금지 (권고 30):**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sup>16</sup> 일부 언론은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및 강화하고 있다.<sup>17</sup>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반대를 주장하는 기독교자유당<sup>18</sup>이 출마했으나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에

<sup>6</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sup>7</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udy on the situation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 measures, 2016.

<sup>8</sup>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at para. 49.

<sup>9</sup>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No Parade, but Pride Preserves in South Korea, 1 June 2015

<sup>10</sup>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17 February, 2017

<sup>11</sup>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A person who commits anal sex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1(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u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sup>12</sup> The Korean Herald, "Gay conscientious objector gets Canada asylum", 15 December 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1215000521>

<sup>13</sup>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at para. 124.34.

<sup>14</sup>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para. 14)

<sup>15</sup> Hankyoreh,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military's ban on sodomy, 8 August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5208.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5208.html)

<sup>16</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KOR/CO/15-16, para. 10

<sup>17</sup>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 April 2015, A/HRC/29/46/Add.1, paras. 60-62

<sup>18</sup> Seoul Shinmum, Korean Islam says "Christian Liberty Party's materials maliciously defame Islam", 10 April 20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0500132>

선거기간 동안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들을 담은 자료들이 선거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기독교자유당은 최종 총 투표수의 2.63%를 획득했다.<sup>19</sup> 그러나 정부에서는 차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을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인종차별 교육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 B.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8. **사형제 (권고 35):**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1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19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지만 사형확정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반 사형수 61명, 군 사형수 4명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에 대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실질적 폐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형제가 생명권에 반하는 형벌제도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에 동참하고 사형집행 검토를 중단하며 사형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9. **고문 방지 (권고 3, 13, 16, 37):** 헌법 제 12 조 제 2 항<sup>20</sup>은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도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률 그 어디에도 고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명확한 개념 정의나 그 정의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8,207건에 이르지만, 고발, 수사의뢰 건은 2건에 불과하고 권고가 이루어진 건도 11건에 불과하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수천 건이 접수된 고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법체포, 감금 등 사건 중 20여명 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극히 낮다.<sup>21</sup>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고문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및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구와 절차를 신설 또는 정비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여야 한다.**

## C. 법의 집행과 법치

10. **군대 내 인권:** 지난 5년 간 평균 약 100명의 군인들이 매년 군대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원인미상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다.<sup>22</sup> 2014년 28사단에서 윤

<sup>19</sup> The Christian Liberty Party website: [clparty.kr/about](http://clparty.kr/about)

<sup>20</sup> 헌법 제 12 조(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sup>21</sup>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 parties due in 2012: Republic of Korea, UN Doc. CAT/C/KOR/3-5, Annex Tables 23-26, 11 April 2016

<sup>22</sup> 통계청, 군 사망사고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2007~2016 통계)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포함한 군 인권침해를 예방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차 강하게 대두되었다.<sup>23</sup> 국방부는 헬프콜을 비롯해 자체 예방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해당 제도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4</sup> 2015 년에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법령을 만들지 않아 2017 년 2 월까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자살사건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sup>25</sup>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국방부에 대한 정보 열람권과 불시 방문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만 한다.**

#### D.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11. **부부간과 가정폭력 처벌 (권고 27, 39):** 정부가 2013 년 수립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성향, 음주 등 중독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이 은폐되고 신고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sup>26</sup> 정부는 성평등 및 인권 의식 증진을 핵심 목표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불처분 및 상담위탁 처분 위주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sup>27</sup>로 인해 가정폭력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sup>28</sup> 특히 정부는 부부간과를 포함한 배우자 폭력을 형사범죄통계 상에 별도로 분류·집계조차 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에도 부부상담을 명령하고

<sup>23</sup> The Korea Times, Will military change itself this time?, 22 September 2014,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1/180\\_165010.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1/180_165010.html)

<sup>24</sup> 군인권공동행동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 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1 December 201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22541>

<sup>25</sup> 2016 년에도 80 명이 넘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사망하였고 그 중 70%가 자살 등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MBC News '중요부위에 불붙이고 성추행까지, 군 가혹행위 여전', 2016 년 10 월 13 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38400\\_19842.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38400_19842.html)

<sup>26</sup>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8%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 경찰신고는 1.3%로 나타남. 폭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있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2013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sup>27</sup>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2013 년 15%, 2014 년 13.3%, 2015 년 8.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상의 대상사건에는 '상습범 또는 재범이 우려되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될만한 것임에도 기소유예로 처리하고 있음. 또한 지난 3 년간(2013-2015)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불처분 비율(38.3%)이 높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상담위탁(31.4%)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16%)처분 위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분(접근행위제한 1.61%, 친권행사제한 0.02%)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4·5 차 국가보고서 부록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 법원행정처 2014-2016 사법연감.

<sup>28</sup> [관련사례] 2016 년 6 월 4 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5 개월간 상담을 받던 가해자가 상담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내를 폭행해 살해함; 노컷뉴스, <'상습 가정 폭행' 사망 여성, 전날 경찰과 상담>, 2016. 6. 7.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자산 조사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정유지적 관점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12. **주민등록제도:**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제한적 사용"이라는 1차 UPR의 권고<sup>30</sup>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 1억 5백만 건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등 국민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sup>31</sup> 미국기업 IMS health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4천 4백만 명 47억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민감한 처방전을 매입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sup>32</sup>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예외 법령이 1천 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수사 편의를 위하여 민간 기업인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의무화하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민간 기업 또한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13자리 숫자 중 출생 시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7자리의 변경을 불허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sup>33</sup>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3.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현재 한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제 3항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sup>29</sup> [관련사례 1] 결혼생활 14년 동안 가해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흉기협박 등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은 쉼터로 피신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임에도 10회기의 부부상담명령을 내림. 이런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하루만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 지내면 이혼해주겠다"는 가해남편의 말에 집으로 찾아갔고 그날 새벽(2013.5.4) 가해자에게 목을 졸려 살해됨; 한겨레, <"죽인다"는 남편과 '협의' 하라니...아내는 이혼소송 중 살해됐다>, 2013.5.22.

[관련사례 2] 2015년 12월 7일, 자녀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찾아온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가해자에 의해 납치되어 임신 4개월 중인 피해 여성과 6세 자녀가 살해됨; 서울신문, <'베트남 일가족 살해' 경찰이 못 막았나>, 2015.12.14.

<sup>30</sup>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29 May 2008, A./HRC/8/40, p. 15

<sup>31</sup> 2017년 3월 현재,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약 3천 5백만 명이다.

<sup>32</sup> IMS health는 이 정보들을 약 20억 원에 매입하여 빅데이터 처리 후 한국 제약회사에 70억 원에 되팔았다. The Korea Herald, Patient Records Leak, 27 July 2015,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0726000368&md=20150727003027\\_BL](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0726000368&md=20150727003027_BL)

<sup>33</sup> 2015년 9월, 하버드대 스위니 교수 연구팀은 IMS health에 매입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를 해제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이 담겨 쉽게 풀렸다고 평가하였다. Sweeney, Latanya., Yoo, Ji Su, De-anonymizing South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Shared in Prescription Data, Technology Science, 29 September 2015, <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2015 년에만 총 인구 약 5 천만명 중 10,577,079 건의 통신 가입자 정보가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 가입자 정보의 제공 절차에 법원 등 외부 통제가 전혀 없으며 정보 및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방대한 양의 가입자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sup>34</sup> 이에 2015 년 11 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입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가입자 정보를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 3 항을 폐지해야 한다.**

14. **DNA 수집:** 2010 년부터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등 11 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소년범,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 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에 중범죄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서 정부와 기업에 향의한 철거민,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등이 채취 대상이 되어 왔다.<sup>35</sup> 국가 DNA database 의 운영은 채취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지만, 2014 년 8 월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가 DNA database 운영을 재고하거나 그 포함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소년범이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5. **보호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정보유출:** 한국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2 차 UPR 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시설 관련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최소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이유로 전국 피해자와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집중 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 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행령들을 개정하여 이 시스템 관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방침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2017 년 5 월부터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 졌지만, 정부는 13 자리 숫자 중 출생 시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7 자리의 변경을 불허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중앙 시스템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고 폭력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폭력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sup>34</sup> 2015 년 5 월, 이용자 5 백명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up>35</sup> Joint Statement of 5 South Korean NGOs, 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 July 2013, <http://act.jinbo.net/wp/7631/>

**E.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16.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권고 36):** 한국 정부는 자의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여 실질적 허가제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집회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sup>36</sup> 정부는 관련 법률상 집회 금지·제한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한 내역을 보면 집회 1천 59건 중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것이 447건으로 전체의 42.4%였다. 집시법 12조<sup>37</sup>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역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69세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약 1년여 간 의식이 없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운영하고 있다는 ‘집회시민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역도 불투명하며 구성도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38</sup> **한국 정부는 집시법 11, 12조를 폐지하고, 집회를 실질적 신고제로 운영해야 하며 물대포, 차벽 등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7. 표현의 자유 (권고 50, 51, 52):** 한국에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임시조치)에 따라 피해 주장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들이 게시물은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신고된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sup>36</sup>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문보고서를 통해 신고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고 특히 긴급집회를 완전히 불허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허가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15 June 2016 A/HRC/32/36/Add.2, para.19, 33, 37

<sup>37</su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 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sup>38</sup>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서울관내 경찰관서의 집회·시위자문위의 구성원 217명 중 112명이 기업체, 병원, 학원 등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였고, 시민단체 추천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서울관내 경찰과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4년 6월 기준)

설치관서	계	추천별 구분			
		변호사·세무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
서울관내 32개 경찰서(청)	217	32	34	12	139
구성비(%)	100	14.7	15.7	5.6	64

[표 1-1]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주민대표위원 세부 내역

계	기업체 대표·간부	병원·약국원장·간부	유치원·학원 원장	기타
139	86	15	11	27
구성비(%)	62	11	8	19

조치이지만 가장 30 일까지 가능해 게시자의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한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권을 두었다고 하나 이는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제 정보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건수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정도이다.<sup>39</sup> 나머지 95%의 표현물은 피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위원구성과 예산확보 측면에서 행정기구임을 확인받은 바 있다.<sup>40</sup>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임시조치제도를 폐지하거나, 피해주장자와 동등하게 게시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통신심의를 폐지하여야 한다.**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sup>41</sup>과 모욕죄<sup>42</sup>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도 형사처벌되어 왔다. 주관적 감정인 모욕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역시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도 모욕죄로 처벌되어 왔다. **한국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법원조차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욕죄 역시 폐지해야 한다.**

18. **공무원 표현의 자유:** 공무원 및 교사는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당가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및 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sup>43</sup>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직원의 정치중립의무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불편부당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sup>44 45</sup>

<sup>39</sup>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최근 5년,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에 따라 143만여 건 게시물 가려, 2015년 9월 10일

<sup>40</sup> 2010. 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35924

<sup>41</sup> 형법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p>42</sup>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p>43</su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 등

<sup>44</sup> 유엔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교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sup>45</sup> ILO 전문가위원회(2016년)는 “[한국]정부가 ILO 111호 협약(차별금지)에 제시된 바대로 초중등 교사가 학교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권고함.

19.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 93 조 1 항에 따라 선거기간 오프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sup>46</sup> 2016 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도 유권자들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과 기소를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sup>47</sup> 또한,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2012 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었지만,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6 에 여전히 남아 있어 글쓴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제 93 조 1 항과 82 조의 6 을 폐지해야 한다.**

20. **양심적 병역거부 (권고 53):**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국가이며 연간 약 600 여명이 수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 상황과 국민 여론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5 년 12 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자 237 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sup>48</sup>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160 명이 넘는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15 년부터 2017 년 3 월 현재까지 17 건의 하급심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2016 년 10 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정부 내에서도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들을 비롯해 전문연구요원과 사회복지요원 등 이미 폭넓은 영역에서 80,000 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바<sup>49</sup>, 기존 대체 복무제도를 활용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제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21. **국가보안법 (권고 54, 55, 56, 57):** 2008 년에 46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13 년 129 명까지 확대되고 구속 기소된 인원도 70 명에 달하는 등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sup>50</sup> 심지어 정부 승인 하에 진행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북측과 회의를 진행한 경우,<sup>51</sup> 북한의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 한 경우,<sup>52</sup> 북한에서 부르는 '혁명동지'를 제창한

---

<sup>46</sup> 선거법 제 93 조 1 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sup>47</sup> Change 2016, We Condemn Repression of Legitimate Voter Actions, 16 June 20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page=2&document\\_srl=1429084&listStyle=list](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page=2&document_srl=1429084&listStyle=list)

<sup>48</sup> 병무청, 병역기피 공개자 명단, <http://open.mma.go.kr/caisGGGS/bygp/list.do>

<sup>49</sup> 2015 년 병무청 통계연보

<sup>50</sup>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sup>51</sup> 프레시안, 검찰, 범민련 간부 3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09. 6. 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5549>

<sup>52</sup>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CNN, 2012. 7. 4.,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

경우(대법원 2014 도 10978),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판매한 경우<sup>53</sup>에도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 및 처벌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22. **보안관찰법 (권고 58):**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 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 개월에 한 번씩 활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제도'는 1)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점(검사의 청구), 2)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상과 관련된 통제수단이라는 점, 3)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재범위험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이중처벌을 한다는 점, 4) 보안관찰기간은 2 년에서 시작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5) 가족 및 교우관계,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등 신고사항이 사생활 전반에 걸쳐있다는 점<sup>54</sup>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보안관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F.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23. **가사노동협약 비준, ILO 협약 비준 (권고 7):** 한국 정부는 4 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 (87 호, 98 호, 29 호, 105 호)을 비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협약인 189 호에 대해서도 비준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5 년 2 월 24 일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2016 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위의 방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비준 ILO 핵심협약 및 가사노동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24.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 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단결권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전속성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50 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노조활동이 아닌 공갈 협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한다. 155 만에 이르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원청사용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사실상 집단 해고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조의**

<sup>53</sup> 연합뉴스, 전자도서관 '노동자의책'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2017. 1.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4/0200000000AKR20170104171500004.HTML>

<sup>54</sup> 보안관찰법 제 2 조, 제 4 조 제 1 항, 제 7 조, 제 14 조, 제 18 조 등 참조.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55</sup>**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가압류와 손해배상, 해고를 비롯한 징계, 업무방해죄<sup>56</sup>에 의한 형사처벌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정부정책 또는 법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정리해고 공장 이전에 관한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7</sup> 또 노조법 제 42 조 2 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sup>58</sup>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을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열거하여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sup>59</sup> **한국 정부는 정당한 파업의 범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파업을 포함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및 손해 가압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sup>55</sup>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 권을 보장할 것을 네 차례나 권고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Case No. 2602, No.3047)

<sup>56</sup>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에서 지적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불법파업이더라도 소극적 노무거부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결정한 판결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업을 선언하면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우선 규정하고, 사용자들은 노조간부들을 고발하고 검찰은 일단 기소하고 보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sup>57</sup> 노조법 2 조 6 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 조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조는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7 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 편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르면 정리해고 또는 공장폐쇄에 반대하여 고용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또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정당행위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sup>58</sup> 제 42 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④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 7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 71 조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 1 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sup>59</sup> ILO는 필수서비스를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 및 공무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에 따라 노조 가입 및 단체교섭의 범위가 제한되며 쟁의권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은 2014년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89.5.28 설립, 1999.7.1 합법화)에 대하여 법상노조 아님 통보하였다. 마찬가지로 2013년 8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했다. 두 노조의 규약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인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 또한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노조는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 3권이 전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즉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sup>60</sup>

25.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1천만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활용되어왔으며 권리보호나 차별시정 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며,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도 2007년 5.16 배에서 2016년 5.63 배로 증가했다. 임금격차를 성별로 분류할 경우 2016년 3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5%이며, 고용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43.2%에 불과하다.<sup>61</sup>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장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시정제도의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하며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정 신청 건수도 높지 않다.<sup>62</sup>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산업부문에서 불법파견이 남용되고 있으며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종합대책의 주요 '전환 대상'은 직접고용 기간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주요 비정규직 집단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는 줄어들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6. **책임 기업 경영과 공급사슬:**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sup>60</sup>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Case No. 1865/2014년 3월 371호 보고서

<sup>61</sup>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6년 8월

<sup>62</sup>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간(2014.12~2015.12) 접수 사례는 359건이며 이 가운데 차별시정이 이루어진 예는 43건(14.9%),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각,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

비정규직(7.4%)보다 4 배 많으며,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벌기업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와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 위 국가이고, 정부 통계로만 매년 2,4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예방과 관련한 재정능력과 연동되어 해결 불가능한 일로 치부되어 왔으나, 사실은 재벌 대기업이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한 결과로,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하청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National Action Plan 을 수립하고,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공급사슬 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양질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7. **NCP 개혁:** 2001 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내연락사무소에 제기된 20 여 건의 진정 중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권고로까지 이어진 건은 2017 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진정이 중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1 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며, 2016 년 처음으로 두 건의 진정이 1 차평가를 통과하여 중재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 역시 양측의 합의 도달 실패를 이유로 권고나 구제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sup>63</sup>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설립되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민간위원 3 인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독립 전문가 기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2017 년 3 월 현재 이 민간위원 3 인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들로 노동 및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sup>64</sup> 또한 위원의 선출 및 중재절차에 노동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연락사무소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을 증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노동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G.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28. **사회보장제도 및 빈곤퇴치 (권고 59, 60):**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이전까지 빈곤율이 변동이 없는데도 수급자를 대폭 감소시켰다. 2 차 UPR 이 있었던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빈곤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수급자 수는 약 22 만명이 감소한 바,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급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sup>63</sup> KNCP, Final Statement of the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ydis case) ([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Hydis.pdf](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Hydis.pdf)); KNCP, Final Statement of the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sahi Glass case) ([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AG.pdf](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AG.pdf))

<sup>64</sup> Status of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2100](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2100) 국내연락사무소의 민간위원 3 인은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전무, KOTRA 단장이 맡고 있다.

추정된다.<sup>65</sup>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개별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개편한 이후에, 모든 급여를 합한 전체 수급자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절대빈곤자가 약 439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게 필요한 기본적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5년 12월 기준 125만 명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제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다. **한국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29. **건강보험 (권고 62):**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약 10% 정도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의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2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암질환 보장률은 72.6%로 2012년 대비 1.5%p 감소하였다. 이처럼 질환별로 접근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 비급여 통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및 보장성 강화, 의료비 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0. **주거권 (권고 61):** 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07년 이후 최근 8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5.1만호 증가에 그쳤다.<sup>66</sup>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주택의 5.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에 불과하다.<sup>67</sup>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늘어난 LH 공사의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을 높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대안이 될 수 없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sup>65</sup> <표 1>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급자수(천 명)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수급률 (%)	3.1	3.2	3.2	2.9	2.7	2.6	2.6	3.2
절대빈곤율 (%)**	8.8	9.5	8.8	8.8	8.5	8.6	8.6	-
상대빈곤율 (%)***	14.2	14.1	13.8	13.8	13.7	13.4	13.3	-

자료 :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5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익 국회의원 제공자료(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주 1.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수×100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59,407명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전가구기준, 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 전국 전가구, 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sup>66</sup> 국토교통부, 2007~2015 임대주택통계

<sup>67</sup> 국토교통부, 2012, 주택업무편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공급목표를 9천호만을 책정했다.<sup>68</sup> **무주택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하고, 임대차 갱신 보장,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31. **교육권 (권고 63):** 2017년 현재, 한국 대학생 85%가 연평균 등록금이 737만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고등 교육비가 높은 순위로 3위에 해당한다.<sup>69</sup> 반면 고등교육에 기여하는 재정 비율 현황을 보면 정부 자원 비율은 OECD 평균인 70%에 못 미치는 32%이고, 가계지출 자원은 OECD 21%보다 훨씬 높은 44%이다.<sup>70</sup> 한국 정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등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등록금 자체는 줄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장학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습시간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에 탈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제도 상 성적제한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등록금고지서 상 금액을 인하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2. **공적연금 (노후보장정책) 및 노인돌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sup>71</sup> 반면 국민연금은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2016년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46%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1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평균임금액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수급액은 약 32만원 정도로 1인 최저생계비(603,403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전히 18~59세 총인구의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33.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한국의 청년 NEET(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8.5%로 OECD 평균 15.4%에 비해 높으며(2012년 자료)<sup>72</sup>, 공식적인 실업률은 10% 내외로 높지 않지만, 취업준비생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되는 통계상 오류를 보정하면 실질 실업률은 30%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가 넓어, 실업 상태에 빠진 전체 임금노동자 중

<sup>68</sup> 국토교통부, 2016, 2017년 주택공급 계획

<sup>69</sup>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

<sup>70</sup> Ibid.

<sup>71</sup>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

<sup>72</sup> OECD(2015).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0 November 2015)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2012년 기준 16.7%에 불과하고 그 중 청년노동자는 잦은 이직과 장기 실업 등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기존 일자리를 악화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저질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자발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H. 소수자

34. **장애인:**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라 대체의사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지원의사결정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

한국의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등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특히 장애인의 소득이 아닌 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부양의무제를 철폐해야 한다.**

「상법」 제 732 조는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법 제 732 조를 전면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 25 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35. **이주노동자(권고 31, 32, 65, 69):**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가능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며<sup>73</sup> 이에 임금 미지급 등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sup>74 75</sup> 한국 정부가 밝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회사의 폐업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가능 회수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sup>73</sup>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sup>74</sup>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 April 2015, A/HRC/29/46/Add.1, paras. 69

<sup>75</sup> 충남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충청남도, 2016년, p.88-89. ‘직장을 옮기려는 의사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62.8%나 된다. 이들이 직장 이동을 원하는 이유로는 ‘임금 또는 수당 미지급(29.2%)’,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6.4%)’, ‘기숙사와 작업장 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sup>76</sup>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교육 내용은 피해를 당할 경우 상담센터를 방문하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없다. **한국 정부는 입국 후 교육과정에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권리구제사례, 피해 시 신고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주 제공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제재조치, 안전한 주거 기준 마련 그리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들을 반인권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무리한 단속을 피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sup>77</sup>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까지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으며 휴대폰을 통해 비자만료 여부를 바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일상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단속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권 침해 없이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합법적 체류허가를 주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36. **미등록 이주아동 (권고 66):**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는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78</sup> 법무부 내부지침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등록 아동에 대해 고등학교 과정 수료시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sup>79</sup> 1년에 100명이 훨씬 넘는 20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구금되고 있다.<sup>80</su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와 제 75조는 체류자격 증명 없이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그 입학 허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교육기본법 제 8조는 의무교육의 수혜자를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접근이 어렵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sup>76</sup>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보고서 2013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여성이주노동자의 10.7%가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 하였다. 피해유형으로는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접촉(29%), 음란 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성매매 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는 사장(88.9%), 관리자(77.8%) 순으로 나타나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sup>77</sup> 매일노동뉴스, 출입국사무소 무리한 단속에 죽고 다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017년 2월 13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74>

<sup>78</sup>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새누리당 이자스민 위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4. 12. 18

<sup>79</sup> 2010. 9. 7. 법무부 지침, 2013. 10. 30. 법무부 지침.

<sup>80</sup> 법무부 화성, 청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공개 자료 (2015. 10. ~ 2016. 8).

입원·수술비에 한정되어 있고 시행의료기관의 수가 제한적이고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이지 않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이 보육지원과 아동보호조치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아동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보육지원이 불가능하고, 아동학대가 있어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sup>81</sup>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자제하고 구금을 금하며, 이들이 교육, 건강, 보육, 아동보호 관련 실질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7. **이주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보호'라 정의하고 있다.<sup>82</sup> 보호소에 보호되는 동안 보호 외국인에게는 1인당 1.84 평방미터(단위)의 공간이 주어지고, 보호실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운동시간 등에 있어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주체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며, 이들은 언제든지 보호되는 대신 출국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는 '구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자의적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 이후 위명여권의 사용, 체류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구금되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로 난민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 안에 출입국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보호 외국인이 보호되는 동안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8. **인신매매 (권고 42, 43, 67):** 한국 정부는 2015년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입하고, 2013년 그 이행을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고 하나,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정의는 여전히 협소해서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sup>83</sup> 그 외에도 법집행 공무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해서 노동착취 및 성착취 목적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이주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10년 넘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만들어온 연예 흥행 비자 제도는 계속되고 있고, 어업과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 내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원양어선과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은 높은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을 내고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20시간

<sup>81</sup> 황필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개관, 국회인권포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14. 4. 3), 43-44 쪽.

<sup>82</sup> 출입국관리법 제 2 조(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 46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sup>83</sup> 김종철, 신안연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015년 9월 2일, <http://www.apil.or.kr/1798>

일하면서 50 만원(원양어선), 120 만원(연근해어선)을 받으면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지만, 선주 등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임금도 체불되어 있어 배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sup>84</sup>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집행 공무원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히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제정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송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고액의 송출 수수료를 규제하고 이주어선원에 대한 노동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여권을 불법적으로 압수하는 선주 등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39. **난민과 난민신청자 (권고 64, 68):**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리셉션 센터로 130 억을 들여 건설하고 매년 20 억의 운영비를 소요하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를 2013 년 개소하였다고 1 년 동안 입소한 난민인정자수는 100 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다른 요건을 다 갖추어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들의 귀화는 거부되고 있다.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은 입국은 고사하고 사증을 발급받기도 어렵다. 게다가 인도적체류자의 가족들은 가족결합원칙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2015 년의 경우 373 명만 지원을 받았다.<sup>85</sup> 2015 년 말부터 8 개월 동안 인천공항의 출입국대기실에서 음식과 의료지원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던 시리아 출신 30 여명의 난민 신청자들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sup>86</sup>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송환대기실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여전히 낮아 2013 년 1,574 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가족결합을 제외하면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24 명(신청자수는 1,574 명), 2014 년에는 74 명(신청자수는 2,896 명), 2015 년에는 62 명(5,711 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난민의 사회통합에 소극적이어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충분한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협약에 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아동에게 국민과 같은 장애인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며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해 폭넓게 귀화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열악한 상태의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라.**

## I. 여성과 아동

40. **아동권리 보호 일반 (권고 17, 18, 19):** 한국에서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교육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교육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포괄적인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sup>87</sup>

<sup>84</sup> The Korea Times, In the hurt of the sea, 20 October 2016,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1/113\\_214313.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1/113_214313.html)

<sup>85</sup> 난민인권센터, 난민처우 관련 (2015. 12. 31 기준), <http://nancen.org/1520>

<sup>86</sup> CNN, Migrants in limbo at South Korean airport, 1 June 2016, <http://edition.cnn.com/videos/world/2016/06/01/south-korea-refugees-in-limbo-hancocks-pkg.cnn>

<sup>87</sup>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과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제1항이 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교육내용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수행기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2016년 실태조사에 응한 한국 거주자의 아동권리교육 경험률은 50%에 이르지 못했다.<sup>88</sup>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교육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sup>89</sup> 한국 정부는 아동과 아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아동 및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국내외 현실에 비추어<sup>90</sup>, 인권의 기본가치로서 비차별을 중요시하는 아동권리교육이 사회전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 **아동친화적 사법 제도 (권고 45):** 한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친화적이지 않으며 사법영역에 있어 아동의 의견청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입양절차에 있어 민법 등은 13세 이상 아동에게만 의사표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sup>91</sup>,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다.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피해자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는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혼용되고 있다.<sup>92</sup>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법체계에서 아동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청취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민법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상아동을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 구금시설이다. 그러나 보호자 의견만으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에 반한다.<sup>93</sup> 더욱이 재량권이 부여된 소년재판부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제도는 부재하여 그 결정에 아동 최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sup>94</sup> **한국**

---

실시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동복지법 제31조가 정하는 아동안전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개별적 보호영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보편적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제3항은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 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섭하지 못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3항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 내용을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규정은 없다.

<sup>88</sup> 2014~2016 아동권리인식도조사

<sup>89</su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2 February 2012, CRC/C/KOR/CO/3-4, paras. 23.,

<sup>90</su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10 March 2014, CEDAW/C/FIN/CO/7, paras. 14-15.,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sup>91</sup> 민법 제869조 제1항, 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8, 가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3

<sup>92</su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sup>93</sup>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sup>94</sup>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정부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제도를 위해 소년법 제 4 조를 개정하고, 관련 국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소년재판부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2. **보편적 출생등록 (권고 29):** 한국의 출생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신고 의무를 지고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95</sup> 정부는 현행법에 과태료 규정을 두어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9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신고의무 미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 태어나지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만이 가능한데,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아동 등은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sup>97</sup> **한국 정부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공적으로 출생신고되어 공적인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3.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권고 38, 40, 41):** 2015 년, 방임되었던 한 아동이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빵을 먹다 발견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였고,<sup>98</sup> 이를 계기로 급하게 장기결석생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sup>99</sup>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의 후속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5 년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체벌금지를 명문화 했으나<sup>100</sup> 아직도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체벌과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가정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 및 피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와 민법 제 915 조(징계권) 등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에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44. **입양:**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의 다수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기관 입양이 아닌,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만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입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민간입양'이란 민법에 따라 개인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입양으로,

<sup>95</su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

<sup>96</su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 4 항

<sup>97</sup> Korea Joongang Daily, "Parents take extreme measures: Those with stateless children go as far as seeking adoption", 14 September 2015.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09149>

<sup>98</sup> Korea Joongang Daily, "Ye-rin deserves better". 28 December 2015.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3282>

<sup>99</sup> The Korea Herald, "Korea tightens child protection policy", 16 January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116000965>

<sup>100</sup> 아동복지법 제 5 조 제 2 항

대상 아동이 요보호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임의적 허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관입양과 달리 민간입양 시 입양부모는 별도의 사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후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파양 건수가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6년에는 전과 10 범의 양부모가 민간입양을 통해 입양한 아동을 학대 끝에 살해한 사건을 통해<sup>101</sup> 현행 민간입양의 문제점과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뿐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입양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입양에 걸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부모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검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후 감독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입양된 아동이 생존, 발달, 보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45. 여성차별 금지 (권고 22, 25, 26): 한국의 젠더 정책에 대한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Gender) 평등 대신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성별이분법을 기반으로 기계적 평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여성(성평등)정책기본법에서 성소수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예로, 2015년 8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반대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6’의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144 개 국 중 116 위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sup>102</sup>.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여성 살해 사건<sup>103</sup>’ 등 다양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sup>104</sup>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한국이 G20 국가 중 1 위이다.<sup>105</sup>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비율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33.7%이며 5급 이상

<sup>101</sup> Korea JoongAng Daily, “Adopted girl dies from duct tape punishment”, 4 October 2016,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24455>

<sup>102</sup>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6/economies/#economy=KOR>

<sup>103</sup>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의 한 변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여성들이 평소에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하다.

<sup>104</sup> 경찰청 통계(2013)

<sup>105</sup> United Nations Offices on Drug and Crime(2008), Homicide statistics sex of homicide victims

공무원은 11.6%에 불과하다.<sup>106</sup> 또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그쳐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인 22.6%에 미치지 않고 있다.<sup>107</sup> **정부는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회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를 강제이행조치로 규정하고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46. **미혼모 권리보호 (권고 28):**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혼모·부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혼모·부의 일 가정 양립이 보장되지 않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직장에서 미혼으로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출산 휴가를 받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 정부는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공무원, 교사 등에게 시행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사업장이 미혼모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미혼모들에게 생애 주기별 지원을 줄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47. **여성 노동자의 권리 및 직장 내 성희롱 (권고 48, 49):**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정규직 노동자는 69.4%,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49.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35.8%를 받는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53.8%는 비정규직이다.<sup>108</sup> 여성 저임금노동자비중은 37.8%로 남성(15.4%)의 두 배가 넘는다.<sup>109</sup>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그냥 여성이라서가 58.3%이다.<sup>110</sup>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는 50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고용비중이 동종업계 평균 70%미만인 기업의 명단공개, 권고에 그친다. 고용 형태, 임금격차, 직무격리 상황보고도 없다. 내용과 평가의 형식화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책정된 임금 구조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성할당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축소를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도 요구된다.**

<sup>106</sup> 국가지표체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2)

<sup>107</sup> 국가지표체계,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sup>108</sup> 2016,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 4호,

<sup>109</sup> 2017,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608&page=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608&page=1)

<sup>110</sup> 2015, 김난주, '성별임금격차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범죄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가해자, 사업주, 동료, 상사 등에 의한 따돌림, 해고,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치료조치, 가해자와의 격리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J.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

48. **공적개발원조 (권고 70):** 시민사회는 유상원조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수준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만들고 이를 모든 사업에 전면 적용,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서야 대외협력기금(EDCF) 영문 홈페이지에만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다.<sup>111</sup>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내용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정 사업에 한해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책임을 개도국 정부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이프가드를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이프가드 적용 첫 사례로, 정부는 EDCF으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댐 건설 사업)을 꼽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선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댐 건설 예정지가 지진 발생 위험지역이라는 점,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sup>112</sup>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수렴하여 내용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준수 의무를 명시할 것. 또한 세이프가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sup>111</sup> EDCF Safeguard Policy,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5001006003> (2016)

<sup>112</sup>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Inquiries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12 September 2016, <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1453305>